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전 북 지 방 우 정 청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개정

1. 관련

가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나.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(2011.5.30., 훈령 제318호)

다. 운영노무지원과-1154(2014.06.16.,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제정)

2. 「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(2014.06.23., 훈령 제333호)」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훈령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업무에 철저을 기하겠습니다.

가. 개정 훈령 :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

나. 주요 개정 내용

- 1)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NAK/S 10:2012(v1.1) 기록관 표준운영 절차: 일반」 등 관련 법령·표준과 용어 및 표현 방식 일치화
- 2) “기록물 생산현황 통보”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3) “기록물 생산현황 통보”를 “기록물의 정리”에서 분리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명시(안 제8조의2 신설).
- 4) 비현행인 용어 및 명칭 현행화(“운영노무지원과” → “운영지원과” 등)

다. 시행일자 : 발령한 날로부터

- 붙임 1.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(안)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★기록연구사

정진희

운영지원과장

유기권

사업지원국장

장재혁

청장

05/04
김병수

협조자

시행 운영지원과-2399 (2016.05.04.) 접수 ()

☎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(효자동2가) / <http://koreapost.go.kr/jb>
전화 [063-240-3521](tel:063-240-3521) / 전송 063-236-3519 / lalala@koreapost.go.kr / 공개